

부산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재나105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1. C

2. D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12.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321820 판결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47076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7,239,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6.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 D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26. 접수 제24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1820호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7. 4. 2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나4707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24.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7023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2. 27.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재판부는 피고 C의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판단을 하였으며, 피고들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도 없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재심사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판단누락’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재심대상 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소송물이 달라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재다2008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중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참조).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만일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10호를 열거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은 재심대상판결에 이른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피고들이 같은 항 제10호의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결은 재심대상 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소송물이 달라 그 판결의 기판력이 피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정본이 2018. 12. 27.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판결정본이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18. 12. 27.경에는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그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같은 항 제9호)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9. 9.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신민석, 판사 양우창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파트 동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132.7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 21584.5㎡

대지권 종류 : 소유권

대지권 비율 : 21584.5분의 49.43 -끝-

